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12.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30호로 2014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고압가스 일반(냉동)제조사업 등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제정 : 동대문구, 서대문구, 도봉구, 광진구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 허가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되고,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

○ 그 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가스사업 등에 관한 허가 기준이 상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가스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본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후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운영되어 왔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관 련 법 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4.1.2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